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 편(총칙) 제3장(통로) 제21조~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, 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계단(Stairways)"이라 함은 30°부터 60°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.
 - (나) "발판(Tread)"이라 함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한 발씩 내딛는 수평부 재의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을 말한다.
 - (다) "발판 폭(Width of Tread)"이라 함은 발판이 가로로 놓여있는 길이를 말한다.
 - (라) "발판 너비(Depth of Tread)"라 함은 발판의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.
 - (마) "발판 높이(Rise)"라 함은 계단에 부착된 발판에서 위 발판과 아래 발판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.
 - (바) "계단참(Landing)"이라 함은 계단의 끝부분에 위치한 수평면의 정지 지역을 말한다.